

##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
----------	-----

제출년월일 : 1996. . .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이유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어 치과기공소인정 등의 인허가 및 신고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치과기공소인정”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으로 함  
(조례안 제3조, 별표)
- “안경업소개설등록”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으로 함  
(조례안 제3조, 별표)
-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및 “의료기관개설신고” 수수료를 1건당 “20,000원”으로 함 (조례안 제3조 별표)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10,000원”으로 함 (조례안 제3조, 별표)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참고자료(발췌) : 붙임

##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3조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중  
“6. 보건 사회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

(단위 : 원)

구 分	기 준	요 액	비 고
6. 보건·사회관계			
① 치과기공소 인정	1 건	10,000	
② 안경업소 개설등록	1 건	10,000	
③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 건	20,000	
④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청	1 건	10,000	
⑤ 의료기관 개설신고	1 건	20,000	
⑥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 건	10,000	

#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 (단위: 원)				【별표】 제증명수수료요율표 (단위: 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생 략>			(증명)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건사회 관계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 건	500		①치과기공소 인정	1 건	10,000	'95년 월사무 처리기준표 415쪽 참조
				②안경업소 개설 등록	1 건	10,000	" 417쪽 참조
				③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 건	20,000	" 419쪽 참조
				④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1 건	10,000	" 420쪽 참조
				⑤의료기관 개설 신고	1 건	20,000	" 419쪽 참조
				⑥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건	10,000	" 419쪽 참조

## 참 고 사 항

### ○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부칙( '92.7.16)제3조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이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13조의2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인정신청수수료. 치과기공소암수신고수수료 및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94.9.27)제2항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수수료액은 종전의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요액과 같은 금액임.

대한민국정부

발행 총무처 (편집 휴 720-4331)  
(보급 휴 754-433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652호(그2) 1994. 2. 28. (월)

1994. 3. 1. 시행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본 인 증 (유형)	인 천 사 무 명 <근 거 정 명>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 <경유> (영희)	구비서류명			<면 현 상 가능 방 법> 수수료 제1)
			정 수	기 회	개	
30-E-09	치과기증소인정 <인정> 1. 의료기사법시행령제2조 2. 동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2호내지 제3호 및 [별지9]	보건소 1. 보건소 2. 7일 3. 7일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3. 증자치기증사의 면허증사본 1부 4. 시설·인천·장비기초서 1부	<입 한 우 편> 수수료는 개별로 대 체임	1994. 2. 28.	보
30-E-20	안경점수기설정 <증정> 1. 의료기사법제13조제1 2. 동법시행규칙제15조[별지11]	서. 군. 구 1. 서. 군. 2. 구 3. 7일 4. 7일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3. 증자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인천 개요서 1부 5. 장비 개요서 1부	<입 한 우 편> 수수료는 개별로 대 체임		
30-F-02	부속의료기관설정허가 <허가> 1. 의료법제31조제1항 2. 동법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3호, 제26 조 및 [별지17]	보건소 1. 보건소 2. 7일 3. 7일	1. 신청서 1부 2. 개설예정지의 약도 1부 3. 대지계면도(대지의 면적과 주변을 표시할 것) 1부 4. 진료과목에 따른 시설·경진등의 개요설 명서 1부 5. 건물계면도 1부 6. 구조설정서(각실의 용도 및 면적을 표시할 것) 1부 7. 관리인표인의 이력서(반영할 관 사진 2에 첨 부) 1부 8. 관리인표인의 면허증 사본 1부	<입 한 우 편> 20,000 원 1994. 4. 20. 1월 2주		
30-F-03	의료기관허가사망변경허가(부속의료기 관포함) <허가> 1. 의료법제30조, 제31조 2. 동법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3호, 제23 조 및 제25호	보건소 1. 보건소 2. 6일 3. 6일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입 한 우 편> 10,000 원 28. (월요일)		
30-F-03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신고> 1. 의료법제30조제3항 2. 동법시행규칙제7조제3항 제3호, 제23 조 및 [별지12]	보건소 1. 보건소 2. 7일 3. 7일	1. 신고서 1부 2. 이력서 1부 3. 면허증사본(원본지장시 원본디즈айн으로 갈음) 1부 4. 건물계면도 1부 5. 구조설정서(각실의 용도 및 면적표시) 1부 6. 진료과목 개요설명서 1부 7. 시설 및 경진등의 개요설명서 1부 8. 방인설정허가증 사본 1부 9. 통기부통본(법인에 한함) 1부 10. 차선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1부 11. 사업계획서(법인에 한함) 1부 12. 일정명단(법인에 한함) 1부 13. 계약(법인에 한함) 1부	<입 한 우 편> 20,000 원 2652호(그2)		

본부 명령 (유령)	법원 사무처 <근거법령>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명	<법원신청 가능방법> 수수료	제1 보
		접수 (경우)	처리 (형식)	제			
30-F-05 <신고>	의료기판신고사망변경신고(경정, 구조, 이전)  1. 의료법 제30조 제6항 2. 통법시정규칙 제7조 제3항 제(호), 제22 조 제2항	보건소	보건소 3일	3일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원본	<일반우편> 10,000원	

# 大韓民國 現行法令集

## 第37(II)卷 目 次

### 第36編 保健・醫事(2)

○體療法	779
○의료법 시행령	803
○의료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811
○의료기관 애비율관리규칙(보건사회부령)	861-10
○진단·용법·사진 및 생정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861-30

第36編 公衆衛生・醫事 第3章 醫事・血液管理 의료법 시행규칙

#### 부 칙 (93.3.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93.8.2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 (94.9.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일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사업자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 醫療法施行規則

(1973年 10月 17日) (文改前)

修正  
1974. 4. 10(准) 1475號  
1975. 12. 29(准) 543號  
1976. 5. 15(准) 639號  
1981. 9. 21(准) 689號  
1982. 12. 31(准) 717號  
1986. 6. 25(准) 129號  
1990. 3. 20(准) 327號(其異議件見附錄)  
1990. 1. 20(准) 530號  
1993. 3. 30(准) 201號  
1993. 3. 30(准) 913號

### 第1章 免 用

第1條【醫師同位免用 및 醫家起業】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원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후법에 따라 면제제1호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1990. 1. 9 본법改正)  
 ② 제1항의 면허증은 당해 국가시험의 합격자 면제가 있을 날로부터 2일이내에 교부한다.  
 ③ 국립보건원장은 의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후 시험한 때에는 그 합격자 면제 후 시험성이 당해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험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학교 및 졸업인원일  
 3. 국가시험 합격인원 및  
 4. 국가(외국인의 경우)  
 5. 사전(용서원서에 정부된 것과 동일한 것) 2매  
(1990. 1. 9 本法改正)  
 ④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 면제시 인사는 면제제1호의 2시식에 의한다.  
(1982. 12. 31 本法改正)  
 第2條【1990. 1. 9 폐지】  
 第3條【助産에 관한 非醫師處置規則 및 修習生定員】  
 ①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외표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기인정증에 한한 규정에 의한 신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으로서 원형과 분만진수기 100인 이상이 되는 외표기관이어야 한다.(1990. 1. 9 本法改正)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제3호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75. 12. 2 本法改正)  
 1. (1975. 12. 2 本法改正)  
 2. 수습생모집 및 수습개최시와 수습과

자제4호의 2시식의 신청서에 디유기 사용을 정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1. 8. 20 本文改正)

1. 면허증  
2. 사전(필모첨부 상반신 반영장면) 2매(면허증의 생년월 일정서류\_경우에 첨부한다)(1990. 1. 9 本法改正)  
3. 면허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992. 12. 31 本法改正)

第6條【免用증의 제출】 ① 의료인이 면허증을 제출 또는 분실한 때에는 면허증의 대교부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대교부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 5회 신청에 의한 신청서에 디유기 사용증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2. 12. 31 本文改正)

1. 면허증의 제출의 경우에는 그 면허증

2. 면허증의 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1974. 4. 10 本法改正)

3. 사전(필모첨부 상반신 반영장면) 2매(1990. 1. 9 本法改正)

③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명예를 대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증 5회 신청에 의한 신청서에 면허증 소의 원인이 된 사용자 소명하거나 대진의 당시 청탁하고 있음을 수 있는 사람이나 사전(필모첨부 상반신 반영장면) 2매를 첨부하여 시용특별시정·적립시정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기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0. 1. 9 本法改正)

第7條【手數料】 ① 의료인이 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2매를 대교부수수료 2천원

1. 면허증 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증 생산 또는 대교부수수료 2천원(1990. 1. 9 本法改正)

3. 국세증명수수료 15백 원(1974. 4. 10 本法改正)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경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기관의 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990. 1. 9 本法改正)

1. 종합방문 개설시기의 경우 : 5만원

2. 병원·치과병원 또는 친병병원의 개설시기의 경우 : 3만원

3. 의원·치과의원·신의원 또는 조산부·임상생殖의 경우 : 2만원(1990. 1. 9 本法改正)

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시작의 변경의 경우 : 1만원

(1975. 12. 2 本法改正)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5천 원을 수령하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993. 3. 3 本法改正)

⑤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면허 또는 허가인정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수령인기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면허기밀지침에 수령증자로 납부하여야

# 醫 療 法

醫 療 法	醫 療 法 施 行 令	醫 療 法 施 行 規 則
<p>● 醫療法 1973. 2. 16 法律第2533號全文改正</p> <p>改正 1975. 12. 31 法律第2862號 1981. 4. 13 法律第3441號(認許可 등 외墅備를 위한行政書士法 등의一部改正法律)</p> <p>1981. 12. 31 法律第3504號 1986. 5. 10 法律第3825號 1987. 11. 28 法律第3948號 1991. 12. 14 法律第4430號(農漁村等 保健醫療를 위한特別 措置法) 1994. 1. 7 法律第4732號</p>	<p>● 의료법시행령( 1973. 9. 20 대통령령제5863호 전문개정 )</p> <p>개정 1976. 1. 21 대통령령제7960호 1976. 9. 3 대통령령제8232호 1977. 2. 25 대통령령제8455호 1977. 8. 16 대통령령제8649호 1979. 7. 23 대통령령제9547호 1981. 11. 2 대통령령제10566호(국립 보건연구원직제개정령) 1982. 7. 23 대통령령제10873호 1989. 8. 7 대통령령제12773호 1992. 6. 1 대통령령제13657호(농어 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 조치법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제13814호 1994. 8. 3 대통령령제14354호</p>	<p>● 의료법시행규칙( 1973. 10. 17 보건사회부령제26호 전문개정 )</p> <p>개정 1974. 4. 10 보건사회부령제437호 1975. 12. 2 보건사회부령제502호 1976. 12. 29 보건사회부령제543호 1978. 5. 15 보건사회부령제595호 1981. 9. 21 보건사회부령제689호 1982. 12. 31 보건사회부령제717호 1986. 6. 25 보건사회부령제790호 1986. 12. 4 보건사회부령제794호 1989. 2. 28 보건사회부령제827호(서 식증본격판삭제를 위한영 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 개정령) 1990. 1. 9 보건사회부령제840호 1992. 1. 16 보건사회부령제887호 1993. 3. 3 보건사회부령제901호 1993. 8. 20 보건사회부령제913호 1994. 9. 27 보건사회부령제945호</p>
<p>第1章 總 則</p> <p>第1條(目的) 이 法은 國民醫療에 關 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醫療의 適正을 期하여 國民의 健康</p>	<p>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p>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  
시 다른 法律에서 다음 表의 왼쪽  
란에 정한 用語를 사용 또는 運用  
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오른쪽란  
에 정한 用語를 사용 또는 運用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用語	改正된 用語
漢醫師	韓醫師
漢方醫療	韓方醫療
漢方病院	韓方病院
漢醫院	韓醫院
漢方醫學	韓方醫學
漢醫科大學	韓醫科大學
漢醫師會	韓醫師會
漢藥業	韓藥業
漢藥業士	韓藥業士
漢藥	韓藥

사”로 한다.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증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  
로 한다.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증 “간호원을”  
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국립대학교의과대학및치과대학부  
속병원특진규정증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1항증 “간호원”을 “간호사”  
로 한다.

⑭서울대학교설치령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증 “간호원면허증” 또는  
“조산원면허증”을 “간호사면허증” 도  
는 “조산사면허증”으로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  
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의료기관의 개  
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일이내에 휴  
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